

15. 벨기에(Belgium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00년(노령), 1944년(장애)
- 현행법 : 1967년(노령 및 유족), 1994년, 2001년(보장소득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- 고용된 자
- 특별제도 : 자영자 및 공무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기준소득의 7.5%(노령 및 유족)
 - 연금수급자와 퇴직 전 연금수급자의 연금 또는 고용과 관련된 회사 지원의 0.5~2.0% 납부
 - 사무직 근로자는 총소득의 100%, 육체노동자는 총소득의 108%
- 자영자 : 미적용
- 사용자 : 기준소득의 8.86%(노령 및 유족)
 - 사무직 근로자는 총소득의 100%, 육체노동자는 총소득의 108%
- 정 부 : 연간보조금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이 4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(2025년 66세, 2030년 67세로 상향)
 - ※ 광부, 선원, 민간항공기 승무원과 같은 특정근로자들은 특정 조건하에 조기 퇴직 가능
 - 최저보장연금 : 연간 208일의 전일제 근로에 상당하는 직장생활이 최소

66.7% 이상인 자

- 부분연금 : 45년 미만의 가입기간이 있는 수급연령 도달자
- 조기연금 : 가입기간이 최소 41년 이상인 63세 도달자(2019년에 42년으로 상향)
 - ※ 가입기간이 긴 특정 근로자들에게 연령요건은 하향됨
- 연금보너스
 - 조기퇴직연령에 도달했거나, 최소 4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계속하여 근로 시 지급
 - 연금보너스는 점차 폐지되고 있으며, 2014년 12월 1일 기준 권리가 발생한 자에만 지급됨
- 휴가수당 : 연금수급자에 지급
- 이혼배우자연금(분할연금)
 - 연금수급자의 이혼배우자에게 60세에 지급
 - 이혼배우자 연금은 재혼과 동시에 중단되며 가입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다시 재개됨
- 노령최저소득보장(소득조사)
 - 65세 이상자에게 지급
 - 소득조사 : 독거의 경우 월 소득이 €1,083.28, 동거(가족수당, 이혼수당과 일부 기타 급여는 제외됨)의 경우 €772.18를 초과하지 않아야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일반 직업에서 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한 자
 - 장애 발생 분기 전 12개월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, 실제 또는 상응하는 180일의 근로를 완성해야하며(시간제근로자인 경우 800시간), 정규직 근로자는 장애 발생 전 30일 동안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주당 38시간 근로(일부 비활동 기간도 요건 충족을 위해 산정될 수 있음)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 및 전환비
 - 최소 1년 이상(결혼직전 법적 동거기간은 산정 대상)사망자와 혼인했던 배우자 45세 이상(66% 이상 영구장애가 있거나 아동 양육 시 연령불문)의 배우자
 - 혼인(또는 가입자 사망 후 300일 이내) 중 출생 자녀가 있거나 사망사유가 결혼이후의 사고 또는 직업병에 기인한 사망인 경우 요건들은 면제됨
 - 최저연금보장 : 사망자가 전체 이력에 66.7% 이상인 경우(1년 전일 근무 시 208일 근무를 기준으로 함)

- 휴가수당 지급됨
- 재혼 또는 동거 시 연금은 중단됨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생애평균소득의 60%(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부부에게는 75%) 지급. 과거 소득은 임금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됨
 - 가입자의 이력 각 년도에 대해 급여산정을 위해 이용되는 최저조정소득은 €24,247.04이며, 최고조정소득은 €55,657.47
 - 최저보장연금 : 연간 최저연금액은 독신의 경우 €14,548.22, 부부의 경우 €18,179.54 임. 가입자가 총 이력기간 100%는 아니나 최소 66.7% 이상 납부한 경우, 연금은 가입기간(연수)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됨
 - 부분연금 : 필요한 완전 이력기간 보다 가입기간이 적을 경우 감액연금이 지급됨. 부분연금액이 최저보장연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보장 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
 - 연금보너스 : 가입자가 62세에 도달 한 해(또는 가입자의 근로연수가 44년이 되는 해)의 1월 1일 부터 퇴직 전달의 마지막 일 (또는 65세에 도달한 달의 마지막 일)까지 근로일수에 €2,2524를 곱하여 지급
 - 휴가수당 :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2년차부터 매년 5월마다 독신일 경우 €738.45, 부부의 경우 €923.09 지급
- 특별노령연금(소득조사)
 - 가입자의 전 배우자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 (생애평균소득 62.5%에서 이혼을 통해 취득된 권리에 의한 연금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함)
 - 혼인기간 이외는 제외
- 노령소득보장(소득조사)
 - 독신의 경우, 특정 아동급여를 받는 자녀와 거주할 경우 또는 기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€1,011.70, 동거일 경우 €674.46
 - 소득조사 : 독신의 경우 월 소득이 €1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동거 일 경우 €625(가족수당, 이혼수당, 기타급여는 제외됨)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
- 급여조정: 급여는 소매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피부양자들에게 기준소득의 65% 지급, 가입자가 동거 중이었으나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40% 지급, 독신의 경우 55% 지급. 1년의 대기 기간 후부터 연금 지급
 - 기준소득은 장애 발생 시점에 받았을 소득
 - 급여 산정을 위한 1일 최고 소득액은 장애 시작 일에 따라 다름
 - 2015.4.1.~2017.12.31. 장애 발생 시 €138,6297
 - 2018.1.1. 이후 장애 발생시 €139,7388
 - 피부양자가 있는 정규직 근로자의 1일 최저 연금액은 €58.68. 동거 중이나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€39.98, 독신자의 경우 €46.96
 -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의 경우, 1일 최저연금액은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€45.78이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€34.33
 -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주당 38시간 근로, 일부 비활동 기간도 요건 충족을 위해 산정될 수 있음
 - 1일 최고연금액은 장애 발생일에 따라 다름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받던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의 80%를 46.6세 이상인 미망인 또는 홀아비에게 생애 지급(매년 연령이 6개월씩 점차 상향되어 2025년에 50세로 상향)
 - 미망인 또는 홀아비가 46.6세 미만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급(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)
 - ※ 매년 연령이 6개월씩 점차 상향되어 2025년에 50세로 상향
 -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45년 미만인 경우, 연금은 20세부터 사망 전년까지의 근로월수 비례하여 계산됨
 - 연간 최저 연금액은 €14,353.79, 완전 기여 이력의 66.7% 이상이나 100%미만인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는 비례 감액연금이 지급됨
 - 최대유족연금액과 미망인 또는 홀아비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합계는 그 또는 그녀 자신의 연금수급액 값의 110%
 - 휴가수당 : 매년 5월에 €738.45가 지급됨
- 급여의 조정 : 급여는 소매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
7. 관리운영기관

- 연방사회보장부(Social Security Federal Public Service)
 - <http://www.socialsecurity.fgov.be>
 - 전반적 감독

- 국가사회보장청(National Social Security Office)
 - <http://www.onss.be>
 - 보험료 징수 및 운영

- 국가연금청(National Pensions Office)
 - <http://www.sfpd.fgov.be>
 -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운영, 제도의 재무관리

- 국가질병장애보험기관(National Sickness and Invalidity Insurance Institute)
 - <http://www.inami.fgov.be>
 - 장애연금에 대한 전반적 운영

<2018년 ISSA 자료>